

검 토 보 고 서

■ 조례명

- 화순군의회 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(개정조례안)

■ 주요내용

- 안 제2조 제2호중 <'일비'라 함은 영 제15조 의한 '일비'를 말한다>에서 <'회의수당'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'회의수당'을 말한다>로 한다.
-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'일비'를 '회의수당'으로 한다.

■ 개정사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4877호 ('95. 12. 30)로 개정공포되어 '일비'가 '회의수당'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자구를 수정코자 함.

■ 검토결과(의견)

- 본 개정조례안은 문팔갑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써 안 제2조 제2호중 '일비'를 '회의수당'으로,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'일비'를 '회의수당'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호중 '일비'라 를 '회의수당'이라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'일비'를 '회의수당'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조표

현 행	변 경
<p>제2조 (정의) 생략 1~2 (생략) 2. 생략 3. <u>'일비'</u>라 함은 영 제15조에 의한 <u>일비를</u> 말한다.</p>	<p>제2조 (정의) (현행과 같음) 1~2 (현행과 같음) 2. 현행과 같음 3. <u>'회의수당'</u>이라 함은 영 제15조 <u>회의수당을</u> 말한다.</p>
<p>제4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생략 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원 당해년도 <u>일비의</u> <u>2년분에</u> 상당한 금액 2. 직무상 상해로인한 장애의 경우 는 의원 당해년도 <u>일비의</u> 1년분 에 상당한 금액 3. (생 략)</p>	<p>제4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현행과 같음 1.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회의수당 - - - - - - 2. - - - - - - - - - - 회의수당 - - - - - - 3. (현행과 같음)</p>